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6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 박형수 · 김기현 · 이종배

엄태영 • 유상범 • 구자근

김소희 · 서일준 · 김석기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난자·정자를 보존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 임.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 중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 및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	
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	
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	
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난임시</u>	4 <u>난임시</u>
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	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
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	이라 한다) 및 난임을 대비하
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	<u>보존</u>
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u>.</u>
③ ~ ①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